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89호 2022. 2. 15.(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72호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73호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874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정선군 조례 제287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876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8

○ 정선군 조례 제2877호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31

○ 정선군 조례 제2878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4

○ 정선군 조례 제2879호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37

○ 정선군 조례 제2880호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40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65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44

○ 정선군 규칙 제1366호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49

○ 정선군의회 규칙 제19호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51

○ 정선군의회 규칙 제20호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5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2.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2호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군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 청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한 신청 또는 제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

[별지 제1호서식]

[ ] 제정
조례의 [ ] 개정 청구서
[ ] 폐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강원도 정선군

○○읍·면(○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다.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안 제2조)

라.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마.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안 제8조, 제9조)

바. 청구인명부의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

사.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안 제12조)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2. 11.)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3호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제2목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 출연기관 등 심사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 심사
3.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정선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심사
4. 감사특별위원회:「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
5.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6. 그 밖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5조(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6조(위원회 존속기간)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윤

리특별위원회는 상시 존속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9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회부·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 및 선임·선출된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 마련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의회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 존속

라.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2. 11.)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4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원이”를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은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정선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정선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정선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원의 퇴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

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윤리강령)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윤리강령) ----------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
<신 설>	제9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현 행	개 정 안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에 따른다. ④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019.5.3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5.31,개정 2019.05.3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정선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

현 행	개 정 안
	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정선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정선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1. ~ 5. (생 략)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17조(징계)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신 설>	제18조(의원의 퇴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현 행	개 정 안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의원의 사임 및 퇴직에 대한 권고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의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의원의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다. 의원의 퇴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2. 11.)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5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5배 ----------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 징수 규정 반영
(기존 2배 → 5배)

□ 주요내용

소속 공무원이 여비 부정수령시 부정수령액 5배 가산 징수(안 제4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1. 07.) 및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6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시설명란 중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을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를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로, 같은 표의 위치란 중 “애산로 25”를 “용담샛길 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15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관리·운영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CYS-Net)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8

□ 제안이유

가. 2020년「정선군청소년수련관」신규 개소 및 「정선청소년문화의집」 폐지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 필요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명칭(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과 별표 1의 명칭(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이 불일치한 관계로 수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 수정

1) 당초: 정선청소년문화의집,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2) 변경: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나. 별표 1의 정선군 청소년시설 위치 수정

1) 당초: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2) 변경: 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15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2.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7호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경비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임.

나.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선개선 및 지위 향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요양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안 제5조, 제7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안 제8조)

마.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포상(안 제9조)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1. 17.) 및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8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용료 등) ①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한 시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을 위해 건립한 시설
3.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내의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사용료 등) ①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한 시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관광을 위해 건립한 시설 3.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내의 시설

□ 제안이유

정선군에서 건립한 관광시설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관광시설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8조의2)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1. 07.) 및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에서 의결된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79호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아리나루관으로 한다.

② 체험관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5. 내·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체험관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체험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험관 운영을 수탁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6호의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5.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관리

□ 제안이유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설의 명칭과 위치(안 제2조)

나. 시설의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이용의 제한(안 제7조)

라. 시설 운영의 위탁(안 제9조)

마.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01. 27.)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2.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80호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사업)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
5.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65세 이상인 사람
10.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라.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마. 빈집정비사업 및 비용의 지원(안 제6조, 제7조)

바. 빈집의 활용(안 제8조)

사.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9조)

아. 지도·감독(안 제10조)

규 칙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1. 07.)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5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접수대장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 제6조제1항에 따른 ---------- ---------- ----------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 ---------- ---------- ---------.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 징 금 액	감 경 기 준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1/2 감경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일 때 1/2 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1/2 감경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1/2 감경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 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18세 이상의 자를 호객·접객·윤락행위가 아닌 단순 고용한 행위 1/2 감경 (※ 단순고용이란 업소에서 주방, 청소, 경리, 서빙, 노래방에서의 시간당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업주의 연령확인 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 제시, 허위신분증제시 등 나이를 속여 거짓으로 알려주어 위반한 경우 1/2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유인 인원이 10인 미만일 때 1/2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1/2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 경 처 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이유

2021년 1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 및 현 규칙의 내용 중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여 규칙의 실효성 도모

□ 주요내용

가. 규칙 원문의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오류 수정

나. 별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수정

다.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수정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1. 07.)에서 의결된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6호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 ③ (생략) ④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

□ 제안이유

전자인증제 도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이 있고, 대체가 가능하여 청산금 수령자 확인 시 인감증명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추가하여 환지청산금 취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 1항에 따라 청산금수령자 확인 시 인감증명서 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증 대신 신분증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1. 27.)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군의회 규칙 제19호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해명)신청서

심사대상 의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해명)신청 의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구 분	1.심사요구 의원( ) 2.심사대상의원 본인( ) 3.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해명) 주요 요지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해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 (인)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78회 정선군의회(2022. 1. 27.)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5일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 규칙 제20호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두는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구성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군의회의원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체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고충심사
4.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9.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위원의 임명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견책: 2년
나.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가 만료되어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척 및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은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증인심문과 징계의결 등)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 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등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